

[법률자문 의견서]

법무법인 평*

나. 본건 조사위원회는 본건 사업 자체 및 그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조사할 수 없되, 본건 사업을 둘러싼 여러 사무 가운데 귀 구의 자치사무 내지 서울시로부터 단체위임 받은 사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귀 구가 제공한 자료 및 서울시 보도자료 등으로 미루어볼 때, 본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소관사무인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현재 귀 구에게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발견되지도 아니함

○ 그렇다면, 전술한 법리에 기대어볼 때 본건 조사위원회가 서울시 소관사무인 본건 사업 자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본건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논리로 본건 사업 지연 등에 관하여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서울시 고유의 업무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본건 사업 관련 사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본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건 사업이 귀 구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 및 일부 서울시와 귀 구 간 구유지 무상사용 등에 관한 협업 등이 진행되었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귀 구가 행사 가능한 업무권한 내의 사무 내지 법령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귀 구에게 위임된 사무(즉, 단체위임사무)가 결부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사무에 국한하여서는 본건 조사위원회가 귀 구의 자치사무 내지 단체위임사무로서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3-05-10 23:05:55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인○ 사무관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자체의 행정적인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법률상 특정사안이라 명시한 만큼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